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1. 30.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11. 16.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1. 11. 17.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1. 11. 30.)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교육지원과장

### 가. 제안이유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최초 민간위탁 이후 6년이 경과하고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계약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

2) 민간위탁(재계약) 내용

- 위탁기간 : 3년

※ 최초 민간위탁일 : 2013년 6월 10일.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마포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성산로 128, 5층 일부 (마포중앙도서관)	98m <sup>2</sup>	5명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세부내역	비고
총사업비	1,211,632	시비(시교육청) 407,930 구비 803,702	
2022년	392,000	○인건비 : 213,000 ○운영비 : 179,000	-시 : 129,400 -구 : 262,600
2023년	403,760	○인건비 : 214,065 ○ 운영비 : 189,695	-시 : 135,870 -구 : 267,890
2024년	415,872	○인건비 : 220,486 ○ 운영비 : 195,386	-시 : 142,660 -구 : 273,212

### 3) 세부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체 재계약 방침 수립 : 2022.1.~2.
- 민간위탁운영체 재계약 추진 : 2022.2.~3.
- 민간위탁운영체 재계약 체결 : 2022.3.

### 3. 검토보고 (박춘주 전문위원)

- 본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2013년 6월 10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로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사무의 위탁기간이 6년 경과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재위탁)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참고로 본 재계약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이 시행되는 2022년 1월1일 이후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무의 재계약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부득이 금번 회기에 제출됨.
- 따라서, 본 재계약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 자료 : 관련법규

## [ 관련법규 ]

### < 진로교육법 >

#### 제18조(진로체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20조(진로체험 지원)

-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시설 등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진로체험기관 발굴,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